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8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이성권 · 서일준
이종배 · 신성범 · 김성원
이양수 · 안철수 · 박수민
유용원 · 이철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, 음주운전,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.

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.

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

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.

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,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·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6호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6호 중 “제54조제1항·제148조”를 “제54조제1항·제93조·제14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운전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5. (생략)</p> <p>26. “운전”이란 도로(제27조제6항제3호·제44조·제45조·제54조제1항·제148조·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)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(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7. ~ 3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5. (현행과 같음)</p> <p>26. ----- -----제54조제1항·제93조·제148조-----</p> <p>-----.</p> <p>27. ~ 34. (현행과 같음)</p>